

아틀리에 933'

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안내문

주택형별 공급세대

구분	74A	합계	입주자저축 가입여부
신혼부부 특별공급	13	13	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

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
----	----

대상 및 자격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혼 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 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인 무주택세대구성원(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 야 함)으로서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 - * 단,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.12.31.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 원을 유지하고,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
 - ※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
 - ※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
 - 소득기준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(맞벌이 160% 이하)
 - 자산기준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초과(맞벌이 160% 초과)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 (3억 3,100만 원)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
 - * 부동산가액 산출기준: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3조 제2항 및 「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」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 액으로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

□ 당첨자 선정기준

• 공급기준

구분	공급 비율	소득기준		경쟁발생시 우선순위
		외벌이	맞벌이	
우선공급	50%	100%이하	120%이하	• 1순위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 (임신 중, 입양자녀 포함) • 2순위: 1순위가 아닌 자(무자녀 또는 상기 신청자격의 2순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첨제(우선·일반공급에서 선정되지 않은자를 포함하여 추첨))
일반공급	20%	140%이하	160%이하	
추첨제	30%	140%초과	160%초과	

• 경쟁시 우선순위

- ※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.
- ① 제1순위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(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)하여 자녀가 있는 자
 -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(입양포함)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
 - 현재 배우자와 혼인신고일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도 포함
- ※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
 -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(광명시)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) 거주자
 - ② 미성년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 수가 많은 자
 - *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·입양한 미성년자녀(전혼자녀)를 포함하되,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.
 - *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의 자녀)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
 - ③ 미성년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
- ※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(광명시)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)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, 경쟁이 있는 경 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.

당첨자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

□ 유의사항

- ※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,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,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(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) 등으로 확인
- ※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(출생증명서,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,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)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, 허위 임신,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. (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- ※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.
- ※ 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,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※ 기타 본 안내문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.

※ 상기 내용은 청약에 참고자료만 활용하시길 바라며, 청약신청은 본인이 직접 관계법령 및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 ※ 본 배포자료는 작업 및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
아틀리에 933'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안내문

■ 소득기준

공급유형		구분	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(2023년 적용)						
	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소득 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~6,509,452원	~7,622,056원	~8,040,492원	~8,701,639원	~9,362,786원	~10,023,933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초과~120%이하	6,509,453원~7,811,342원	7,622,057원~9,146,467원	8,040,493원~9,648,590원	8,701,640원~10,441,967원	9,362,787원~11,235,343원	10,023,934원~12,028,720원
	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초과~140%이하	6,509,453원~9,113,233원	7,622,057원~10,670,878원	8,040,493원~11,256,689원	8,701,640원~12,182,295원	9,362,787원~13,107,900원	10,023,934원~14,033,506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초과~160%이하	7,811,343원~10,415,123원	9,146,468원~12,195,290원	9,648,591원~12,864,787원	10,441,968원~13,922,622원	11,235,344원~14,980,458원	12,028,721원~16,038,293원
소득기준 초과/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		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	140%초과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충족	9,113,234원~	10,670,879원~	11,256,690원~	12,182,296원~	13,107,901원~	14,033,507원~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초과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충족	10,415,124원~	12,195,291원~	12,864,788원~	13,922,623원~	14,980,459원~	16,038,294원~

- 기준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를 선택해야 함.
 - 상위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 - 추첨제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.31억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(1인당 평균소득(661,147) * (N-8) 100% 기준)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
■ 자산보유기준

구분	보유기준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		
부동산	3억 3,100만원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 표준액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사군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 결정 가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사군구청장)	주택 외
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				
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
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사군구청장)									
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 결정 가격							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(관할 시, 구, 읍,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) 「초지법」에 따른 초지(소유자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) 공공용지(도로/구거/하천등)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 또는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(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함)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 									

■ 자산입증 제출서류(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)

해당자적	자산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"부동산소유 현황"이 있는 경우	공통 (필수) ①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) 및 토지대장	①,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s.go.kr)
	추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• 공동(개별)주택가격 확인서 [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]	① 서울시 이택스 (etax.seoul.go.kr), 위택스 (www.wetax.go.kr) ② 주민센터
	토지를 소유한 경우 • 개별공시지가확인서 [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 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]	
	주택 외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• 집합건물: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[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 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] (서울시: ETAX 이용안내 > 조회/발급 >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(서울시 외: 위택스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• 집합건물 외 건물: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,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	
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	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(www.eum.go.kr)	
"부동산소유 현황"이 없는 경우	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*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'부동산 소유 현황'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s.go.kr) ② 주민센터